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94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요	3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5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2조	7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10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3조의2	12
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15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1조의5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Ⅲ. 검토의견

1. 개요

현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6개 법률에서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 제한의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에서 포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음.

2013년 7월 정신장애인·노인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개편되었는데(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정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민법」상 행위능력 제도의 변화 >

종래 「민법」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개정 「민법」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제9조제1항)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제10조제2항·제4항)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제12조제1항)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는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제13조제1항)

자료: 법제처 자료 일부수정, 2020.1.

이에 개정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각종 허가, 위원회의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 또는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상당한 주의의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바,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i) 자격시험, 인허가 요건, 그 밖의 검증수단을 통해 사전에 직무수행능력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ii) 사후적으로 심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허가 및 자격의 취소 또는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 등을 해임·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격사유) ----- ----- -----. ----- -----.
1.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의 요건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제20조¹⁾), 운수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받아야하며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에 운수종사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제31조²⁾), 피한정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제26조³⁾), 운송사업자가 동 조치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면허기준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운송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 차고지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생략)

2)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① (생략)

②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수종사자”로 본다.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사업개선명령)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원활한 도시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전용차량이나 체계시설의 개선
4. 운행 시간·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6. 운임 징수 방식의 개선
7.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8.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③ (생략)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사업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후통제장치도 마련(제35조4)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2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 ----- ----- 1. 피성년후견인 부 칙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면허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6. (생략)

7.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2. (생략)

13.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22의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1조제1항5), 평가대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⁶⁾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제21조제2항7) 동 등록절차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을 사전에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동법 제23조는 평가대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⁸⁾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5)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1.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나. 교통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자 중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제3호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

7)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8)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23조(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⁹⁾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등록취소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통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6.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 4. (생략)
5.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7. (생략)

③ (생략)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4. (생략) ② (생략)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 광역교통에 관한 심의·조정을 수행하고 있음.

동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으므로,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을 사전에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 제2항제2호¹¹⁾에 따라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면직 또는 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위원의 자격요건을 통해 사무처리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면직 또는 해촉 규정을 통해 임명직 위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⑤ (생략)

11)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3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략) ②·③ (생략)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3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공제 조합의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 만, 제60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도 조합대표 전 원을 포함하는 35명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운영위원회) ① 법 제63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 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 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이사 장 및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보험·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 던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 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교통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총회가 조합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 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 및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 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3. 해당 연합회의 회장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⑥ (생 략)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 한다.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계약관·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⑩ (생 략)

동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조합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해관계자는 해당 연합회의 회장과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제9호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의 임면을 회의에 부칠 경우 해촉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후통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6. (생략)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6.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항공·철도 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¹³⁾,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위원의 자격요건을 통해 위원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고, 면직 또는 해촉 규정을 통해 임명직 위원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13)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항공·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자
2. 대학에서 항공·철도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4. 항공·철도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자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경찰·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1조의5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격사유) ----- -----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략)	1. 피성년후견인 2. ~ 6. (현행과 같음)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략) ②·③ (생략)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¹⁵⁾ 허가의 결격사유 조항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인의 경우에도 그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제28조 및 제33조¹⁷⁾에 따라 같은 결격사유를 적용받게 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므로 직무수행능력으로 운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요건과 운전업무 종사능력이라는 인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요건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화물자동차의 등록,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 등의 물적 요건¹⁸⁾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 제7조¹⁹⁾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요건을 살펴보면,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대수에 따라 개인 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가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갖추 것을 요구하며, ②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함. 한편, ③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할 때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운전업무 종사능력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으로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존재함.

유사 사업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 2014년 1월 28일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대상으로 허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4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제조합의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③ ~ ④ (생략)

- 20)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 14.>
-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51조의4와 시행령 제11조의4²¹⁾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조합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해관계자는 해당 연합회의 회장과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임.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4(운영위원회) ① 법 제51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보험·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보험계리사·세무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교통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총회가 조합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3. 해당 연합회의 회장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⑥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계약관·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요율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 ⑩ (생략)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4제7항제9호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의 임면을 회의에 부칠 경우 해촉할 수 있음.

이처럼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후통제 절차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2